

척척박사와 함께하는  
노동법 상담소



**질병으로 퇴사한 경우,  
실업급여를  
받을 수 있나요?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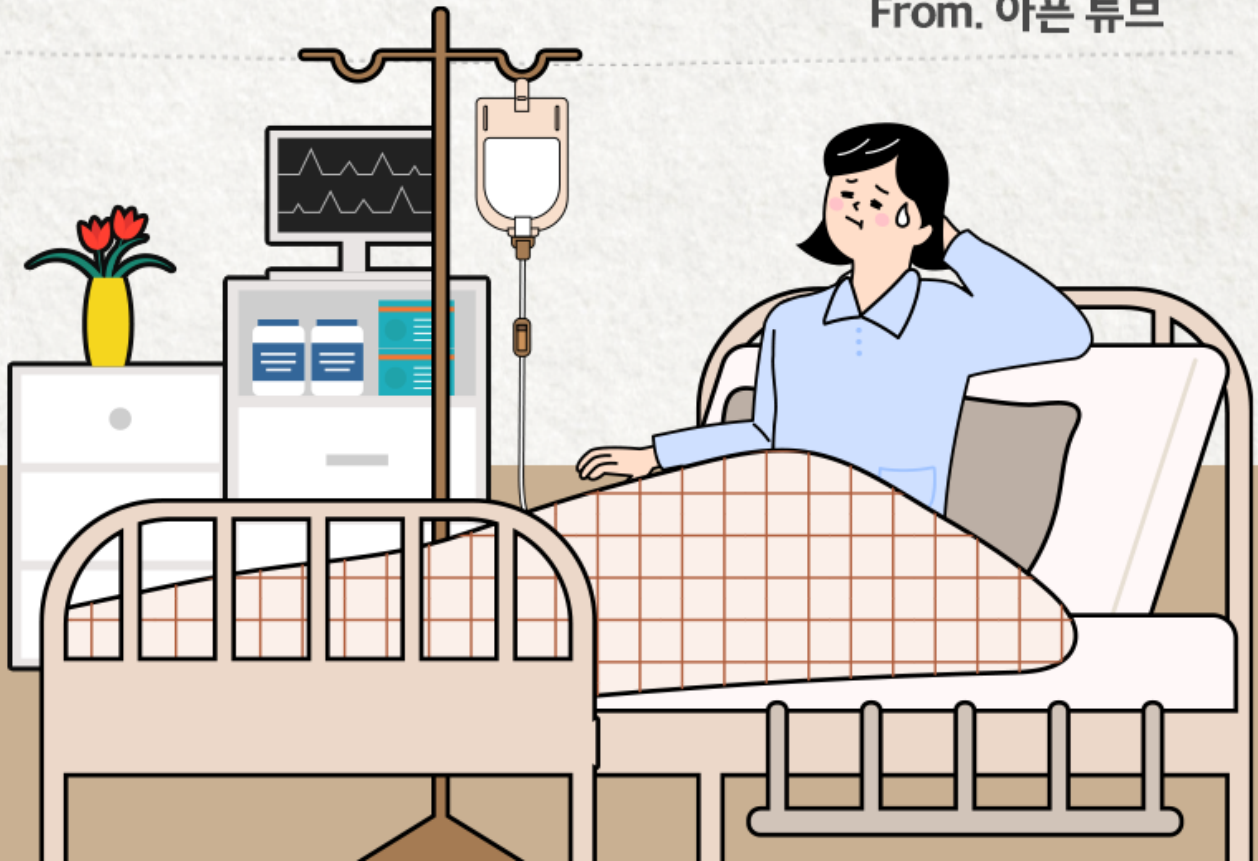


To. 척척박사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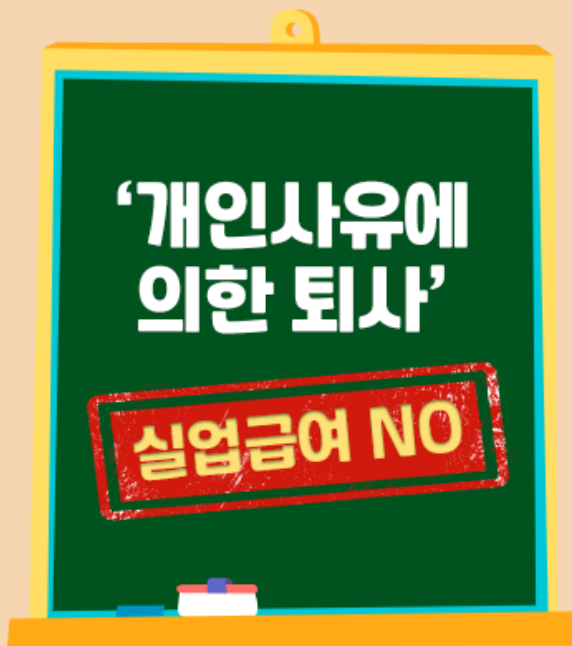
질병으로 인해 회사에 직무전환 신청을 했는데  
승인되지 않아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.

개인 질병때문에 퇴사하는 경우  
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?

From. 아픈 튜브



기본적으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 
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

**‘개인사유에 의한 퇴사’**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 
**개인 질병으로 정상 근로를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도**  
원칙적으로 **개인사유 퇴사에 포함**되기 때문입니다.

그러나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 
**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 
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**되는 경우  
**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**될 수 있습니다.



**이 사례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와  
질병으로 인한 직무 전환요청**을 거절한 **회사의 의견서**를 받아  
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노동관서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하지만, 질병이 경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거나  
본인이 주관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판단을 하여  
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.



업무 수행이  
곤란하다는 판단은  
본인이 아닌  
**의사의 소견서**를  
근거로 합니다!

또한 개인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 
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으며,  
**향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수급자격이 인정**될 수 있습니다.

참고로 **질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해**  
**발병**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 
**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**할 수 있으며,  
승인 시, **휴업급여**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

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-0075  
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[www.kcomwel.or.kr](http://www.kcomwel.or.kr)

**실업급여와 관련해  
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?**



### 문의처

고용노동부 상담전화 **국번없이 1350**  
온라인 상담 <http://1350.moel.go.kr/home>  
근로복지공단 **1588-0075**